

[사 건 명] 행심 2018 - 2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서면사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05.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인천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하여 2018. 5.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서면 사과, 3개월간 접촉 금지, 10일간 교내봉사, 청구인과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5.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8. 5.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 등의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막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이 겁이 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 다. 청구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직접 폭력을 행사한 ○○○ 중학생들과 같이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가중한 평가로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폭력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기 용이하게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학교폭력 행위에 가담한 가해학생으로 볼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장소에서 이탈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청구인은 학교폭력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담한 학생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선도와 교육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 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4. 28. ●●●과 페이스북 계정의 확인과 관련하여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4. 28. 오후 9시 20분 경 ●●●을 만나 같은 ○○중학교생인 □□□, ◀◀◀, ●●● 및 ◻◻◻중학교 학생들인 ◆◆◆, ⊕⊕, ■■■ 등 및 □□중학교 학생들인 ▣▣▣, □□□ 등과 같이

☒☒도서관 공터의 벤치로 이동하였다.

다.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을 둘러싼 상태에서 청구인, ▽▽▽ 등이 ●●●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확인하였다.

라. 또한 ●●●은 □□□, ⊕⊕⊕,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2) 청구인은 ●●●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 등의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 없으며, 오히려 □□□의 폭력행사를 제지하고 막았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데,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도서관

에 왔을 때에는 청구인 등이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 등이 자신을 폭행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은 청구인 등이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킁킁거리는 것이 두려웠고, 핸드폰을 검사할때도 많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은 폭행을 당할 때 구경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청구인을 포함한 2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어두운 벤치공터로 이동하는 과정, 청구인 등이 20명의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공터에서 ●●●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과정,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 □□□, ⊕⊕⊕, ◇◇◇이 ●●●을 폭행하는 과정 등 이 사건의 전반적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상당한 시간동안 불안감과 두려움, 무력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 등의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에게 불안감, 두려움, 공포감을 가하여 ●●●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재량권일탈, 남용여부)

-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료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 등의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전반적인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관여정도가 크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의 태양이나 죄질이 그리 무겁지 않는 점, 학교담임선생님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학급 반장으로서는 지지도가 높고 학급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에 비추어 앞으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있어서는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가 이유 있는 만큼,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